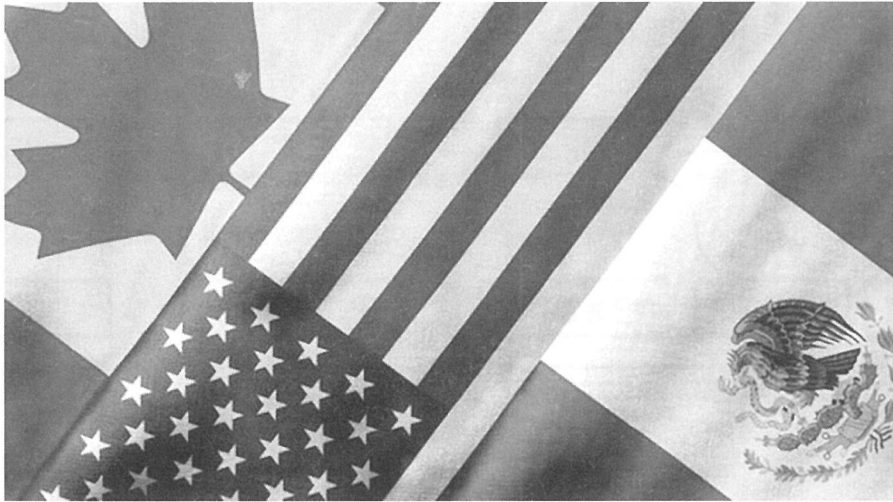


해 외 낙 농 소 식



조석진
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트럼프, 낙농업계의 요구로 NAFTA 폐기를 연기!



민주, 공화 양당의 하원의원 6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한 초당적인 서한을 통해 미국의 NAFTA 탈퇴보다는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낙농가연합(NMPF), 미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및 국제유제품협회(IDFA)는 서한을 통해,

23년째에 접어든 NAFTA 협정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유제품수출이 유지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기보다는 시대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USDEC에 의하면, 미국은 국내 우유생산의 약

15%에 달하는 연간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12억 달러와 6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IDFA 회장 Michael Dykes, D.V.M.씨는, “올해 초 멕시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멕시코 측에 언급한 바와 같이, NAFTA는 양국에게 매우 중요하며, 양국의 농업분야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그 같은 실적을 감안할 때, 최근 캐나다가 추구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트럼프 NAFTA 폐기 연기

이 같은 하원의원들의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NAFTA는 “역사상 최악의 협상”으로, “재앙”이라고까지 언급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달되었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통상정책의 재협상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은 “NAFTA를 폐기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주말 미 상무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미국의 통상협상이 협상대상국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공정한 대우를 받아 왔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NAFTA는 미국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불공정한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NAFTA를 공정한 협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지를 검토하기 위해 협상폐기를 당분간 기다리겠지만, NAFTA는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매우 유리한 협상이었으며, 특히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 매우 거칠게 대해 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 장관 Wilbur Ross는 미국의 통상협상에 대한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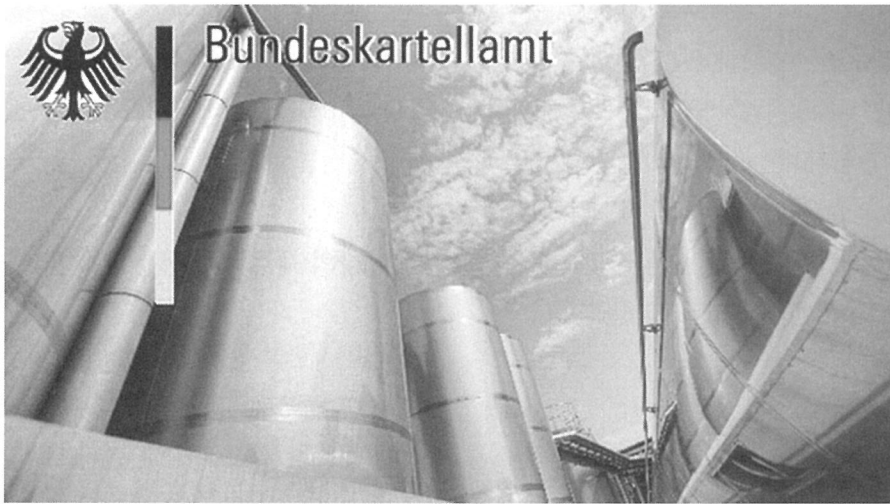
캐나다의 새로운 유성분 분류체계 겨냥

이번 서한을 통해 미국 낙농업계 지도자들은, 2016년 4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6등급(Class 6)의 새로운 유대등급을 신설함으로써, 미국산 한외여과우유(ultrafiltered milk)의 캐나다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점에 대해 경고를 보낼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유제품수출협회(USDEC)의 Tom Vilsack 회장은, “이번 캐나다의 결정은 캐나다의 유업체들이 미국산 유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캐나다산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도록 제조비용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캐나다정부의 결정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 낙농업계는 이번에 캐나다가 새로이 시행한 7등급(Class 7) 유성분전락은, “현재까지 캐나다에 수입되던 미국산 유제품의 수입을 제거함과 아울러 국제분유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출처: DAIRYreporter.com(by Mary Ellen Shoup, 2017. 5.2)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독일, 원유공급체계 변화 모색



독일의 정부조직으로 시장의 경쟁환경조성을 추구하는 Bundeskartellamt는 원유의 집유체계에 대한 행정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를 통해 Bundeskartellamt는 최근까지의 조사결과를 제시함과 아울러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원유공급체계를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첫 대체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들로서는 Bundeskartellamt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너무 긴 계약해지 통지기간

Bundeskartellamt의 회장 Andreas Mundt씨는 독일에 있어서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계약해지를 위

한 통지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독일의 낙농가들은 한 유업체와 납유계약을 체결하면, 전적으로 해당 유업체에만 납유해야 하며, 타 유업체로의 납유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Mundt씨는 “이 같은 제도는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낙농가와 신규로 낙농에 참여코자 하는 농가는 물론 생산을 확대코자 하는 유업체에게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원유가격이 집유가 끝난 후 참고가격과 시장 정보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능한 한 보다 경쟁지향적인 집유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Bundeskartellamt는 2016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집유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계

약기간, 전적으로 한 유업체에 납유해야 하는 납유 조건, 납유 후에 유대가 결정되는 문제, 그 외에 몇 가지 시장정보체계를 문제로 삼았다.


2년의 통보기간이 필요

이를 위해 Bundeskartellamt는, 2015년 현재 전체 집유량의 98%에 달하는 3천 90만 톤을 집유하는 89개의 개인 및 가공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전체 집유량의 97.8%를 차지하는 유업체와의 집유계약에 있어서, 낙농가는 전적으로 한 유업체에만 납유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납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전체 납유량의 절반을 넘는 원유를 납유하는 낙농가에 있어서, 납유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의 시간여유를 두고 납유계약파기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납유량의 87.5%를 차지하는 낙농가에 있어서 납유계약 종료를 유업체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연중 단 1회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통

보기간은 사실상 2년을 초과하는 셈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납유처변경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활동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의 경우, 전체 납유량 대비 납유처를 변경한 유량비율은 단지 1.0%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방안

Bundeskartellamt는 이번 보고서에서 납유중지를 위한 통보기간단축, 납유관계와 협동조합 조합원자격의 문제, 납유 전에 유대와 납유량을 결정하는 문제 등을 완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016년에 Bundeskartellamt는 납유와 관련하여 유업체가 낙농가에게 제시한 납유조건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였다. 예비조사로 북부독일의 최대 유업체인 DMK(Deutsches Milchkontor GmbH)와 모회사인 Deutsches Milchkontor eG의 납유조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조사를 타 유업체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DAIRY reporter.com(by Jim Cornall, 2017, 3.29)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